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26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김정호 · 김남희 · 이연희
이수진 · 서왕진 · 박해철
박 정 · 허종식 · 윤후덕
임미애 · 전진숙 · 안태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피의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 또한 수사단계에서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송치 통지 대상에 피의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이러한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사결과 통지 대상에 피의자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법적 구속력이 약화되어 수사기관이 법 집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등뿐만

아니라 피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도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6).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5조의6 중 “고소인”을 “피의자와 고소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의자에 대한 송부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5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u>고소인</u> · 고발인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 ----- ----- -- <u>피의자와 고소인</u> ----- ----- ----- ----- ----- ----- -----.